

#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 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61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 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①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6656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간에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군·구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한다.

부 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54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 시행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호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부칙 <제17854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